

地自制 環境行政에 바란다

〈1〉

—환경행정요원의 전문화를 앞당겨야 한다—

금년 7월부터 기업체의 환경
인·허가권, 지도단속
권 및 행정처분권이 환경처에서
지방자치제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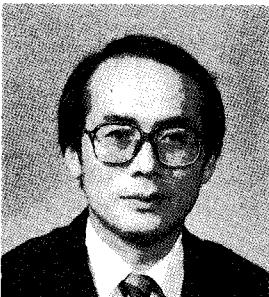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시·도·군·구의 환
경행정 전담기구도 대폭 확대되었고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
으나 환경행정요원도 2배 이상 증원
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로의 업무이관이 사전 충
분한 준비(인력 및 장비면에서)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상당수의 여론도 있었으나
어차피 지자체 행정체제로 전환되
어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하여 이
러한 여론은 별로 중요하게 부각
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창구 일원화
를 꾸준히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지
자체 행정의 지향보다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권의 일원화라는 차원
에서 여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
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경인들은 환
경행정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
후에는 환경보전이 후퇴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張 塚 榮
(본 연합회 회장)

본회에서는 그동안 창구 일
원화를 꾸준히 주장하여 왔
기 때문에 지자체 행정의
지향보다는 지도단속 및 행
정처분권의 일원화라는 차
원에서 여타 의견을 제시하
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의 환경인들은 지자체로 이
관된 이후에는 환경보전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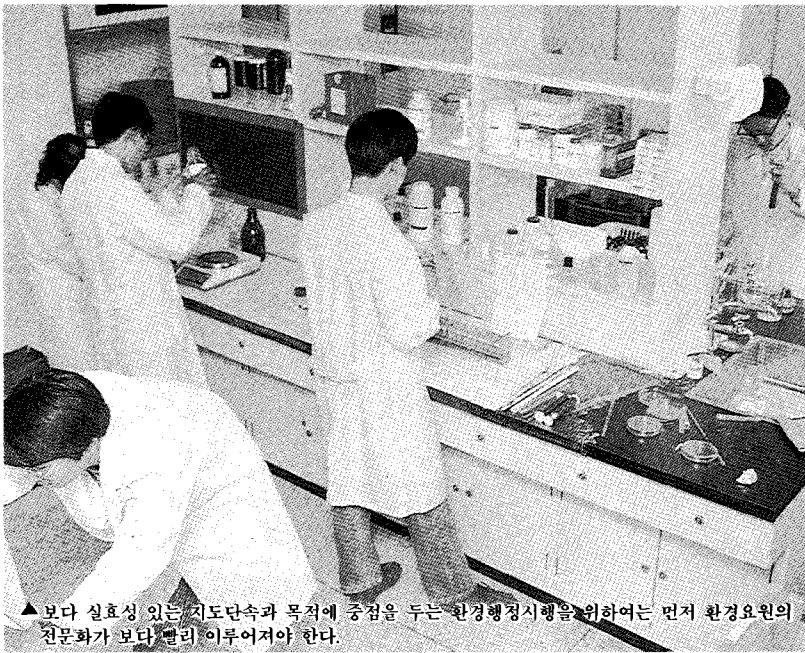
첫째, 지자체 환경행정부서의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둘째, 여타한 자자체 행정과 맞
물려 향토이익의 보호 및 지역 이
기주의를 지향하여 개발우선주의
가 환경보전을 앞서가는 관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셋째, 지역인과 관계의 전통윤리
가 환경행정에 침투할 때 과연 소
신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겠는가 하
는 우려와

넷째, 제조 및 환경과학기술분
야는 광범위하고 어제와 오늘의
다를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하는
영역인데 환경행정요원이 최신의
기술과 정보에 어두워서는 과규제
자를 합리적으로 관광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지도단속에 있어 기
술적인 면은 배제되고 법의 범주
안에서만 행해질 수 밖에 없지 않
느냐 하는 염려에서였다.

물론 개발과 성장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건에서도 환경행
정은 지금까지 꾸준한 발전을 지
속하여 왔고 앞으로도 순리대로
발전하여 갈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과 목적에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시행을 위하여는 먼저 환경요원의 전문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지자체로 환경영업무가 이관된지도 벌써 3개월을 넘어섰다. 이 시점에서 환경행정요원의 전문화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기구확대와 인력충원을 급속히 하다 보니 전문인력도 확보되었지만 비전문 인력도 상당수 포함되었고 이들의 전문화는 더디기만 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추호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며 더디어서도 안된다.

더우기 무지의 소치라는 변명은 통할수도 없으며 외부의 관용을 바라서는 더더욱 안된다.

1년을 후퇴하면 10년 아니 그 이상을 노력해도 회복이 안될 수도 있다.

과중한 업무겠지만 환경법과 관련하여 오염저감에 따른 방지기술 또는 System 검토에도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입법이나 행정은 그 내용을 강화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여론 무마용으로 건수 위주로 양적인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야 한다(물론 언론도 양적인 개념의 비판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왜냐하면 환경인·허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오염의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여 법적 또는 행정절차가 목적보다 더 치중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현안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요원의 전문화가 앞당겨져야 한다.

현행 환경보전 우선주의적인 입법체계하의 환경법도 무려 16개의 복수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관련 타법만도 20여개에 이른다. 그리고 매일 수많은 환경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중한 업무겠지만 환경법과 관련하여 오염저감에 따른 방지기술 또는 System 검토에도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입법이나 행정은 그 내용을 강화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지도 단속과 목적에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시행을 위하여는 먼저 환경요원의 전문화가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

'발언대'는 건강한 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발언대'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